2019년 7월 1일 '비료판매 가격표시제' 전면 시행

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비료가격을
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.

비료 판매가격 표시방법

○ 원칙적으로 개별 제품에 라벨, 스티커 등으로 표시

○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 가능

진열표시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, 포장단위, 판매가격 표시

박스표시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 · 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 표시

게시판표시 상기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보관 · 진열 · 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〈비료의 종류, 상표명, 포장단위, 판매가격, 제조(수입)회사명〉를 비료를 보관 및 진열하는 장소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활자크기 36포인트 이상으로 게시판 형태로 표시

○ (가격수정) 가격변경 또는 할인판매의 경우 기존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 표시

※ 관계법률 : 비료관리법 제14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4,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· 제5항, 비료가격표시제 실시요령(농진청 고시)

가격표시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시장 · 군수 · 구청장, 농진청장)

– 1차 위반시 40만원, 2차 위반시 60만원, 3차이상 위반시 80만원 –

문의사항은 해당 시 · 군 · 구의 농업관련 부서,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(044-201-1893),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(063-238-0829), 농협경제지주 자재부(02-2080-6403)로 연락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